편입학생 전적 대학 학점 인정 지침

제 정 : 2026. 11. 20.
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본교 학칙 제36조(편입학자 및 재입학자의 학점인정)에 따라 편입학생의 전적대학 취득 학점 인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 대상) 이 지침은 본교에 편입학한 학생에게 적용한다.

제3조(기본 원칙) ① 전적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본교 교육과정과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.
② 학점은 인정하되, 성적평점은 산입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.
③ 인정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에 포함한다.
④ 학점 인정 여부는 학부(전공) 심사를 거쳐 확정한다.

제4조(인정 범위 및 한도) ① 3학년 편입학생 인정 학점은 65학점(3학년 편입, 졸업학점의 1/2)으로 한다.
② 전공과목 인정 학점은 학부(전공) 심사를 거쳐 확정하되 졸업에 필요한 단일전공 최저 이수학점의 1/2를 초과할 수 없다.
③ 교양학점은 본교 졸업에 필요한 교양 학점(30학점)을 인정하며, 교양학점에 대한 기타 졸업기준을 부과하지 않는다.
④ 초과 학점은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한다.

제5조(인정 기준)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.
1. 전적대학에서 C학점(또는 70점) 이상 취득한 과목
2. 본교 교과목과 내용·시간·수준이 동일 또는 유사한 과목
3. 수업시수 및 학점이 본교 기준에 부합하는 과목

② 교과목 유사성 판단이 어려운 경우 강의계획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③ 실험·실습·현장실습·졸업논문 과목은 별도 심사를 거쳐 일부 또는 전부를 불인정할 수 있다.

제6조(불인정 과목) 다음 각 호의 과목은 인정하지 아니한다.
1. F학점 또는 낙제 과목
2. 청강·수료·패스(P) 과목(단, 별도 기준이 있는 경우 예외 인정 가능)
3. 본교에서 이미 이수한 동일 과목
4. 졸업요건과 무관한 비교과 과목

제7조(절차) ① 편입학 담당부서는 학점인정 담당부서로 전적대학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별도로 편입생에게 요구할 수 있다.

제8조(학점 표시 방법) ① 인정된 학점은 “전적대학 인정”으로 표기한다.
② 성적은 평점 평균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③ 통합정보시스템에 별도 코드로 입력한다.

제9조(재심의) ① 학생은 인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.
② 재심은 소속 학부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.

제10조(기타) ①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학칙 및 학사내규를 준용한다.

부 칙 <2026. 11. 20.>

1. (시행일) 이 지침은 2026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2. (경과조치) 이 지침 시행 전에 2026학년도 편입학생의 학점 인정에 관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지침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.